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 의 정 부 지 방 법 원

## 제 1 행 정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24구합254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
| 원 고 | 1. A |
| | 2. B |
| 피 고 | ◯◯군수 |
| 변 론 종 결 | 2025. 5. 13. |
| 판 결 선 고 | 2025. 6. 10. |

##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5. 3. 원고들에 대하여 원고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한 지방세 20,643,28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 이 유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 1. 처분의 경위

### 가. 관계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은 2009. 5. 15. 부동산 매매 및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2) C 설립 당시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원고 A은 C의 사내이사로, 원고 B는 C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다.

3) 비상장법인과점주주연계조회에 의하면, 원고들은 2009. 5. 18.부터 현재까지 C의 발행주식 총수 2만 주(1주당 금액 5,000원, 자본금 합계 1억 원) 중 각 1만 주를 보유하고 있고, 원고들은 부부이다.

### 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1) C은 2014년경부터 재산세 등 합계 21,635,500원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2) 피고는 C의 재산으로는 위 체납액 및 체납처분비(강제징수비)를 충당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원고들을 지방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후 2023. 5. 3. 원고들에게 20,643,2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부과처분'이라 한다)하였다.

### 다. 전심절차

원고들은 이 사건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23.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3. 11. 22. 원고들의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 2. 원고의 주장

원고들은 C 설립 당시인 2012년경 친인척으로부터 C의 이사와 감사로 등재를 하여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만 있을 뿐, C의 주주명부에 주주로 등재된다는 것에 대하여 수락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로부터 이 사건 부과처분을 받고 나서야 원고들이 C의 주주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C의 원고들 명의 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가 아니다. 따라서 원고들을 C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4. 판단

### 가. 관련 규정 및 법리

1) 지방세기본법 제46조는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에서 '무한책임사원'(제1호),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제2호)을 규정하고 있고,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24조 제2항 제1호에 의하면,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 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중 '친족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

2)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대법원 2003. 7. 8. 선고 2001두5354 판결,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등 참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부부인 원고들이 이 사건 부과처분의 과세기간 동안 C의 발행주식 전부를 보유하고 있었고, C 설립 당시부터 2012. 2. 9.까지 사이에 C의 법인등기부에 원고 A은 사내이사로, 원고 B는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주주명부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법인등기부등본의 기재 내용과 달리 원고들이 C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정은 원고들이 증명하여야 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으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

판사 김○○

판사 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별지

## 관계 법령

**■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4. "특수관계인"이란 본인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 법 및 지방세관계법을 적용할 때 본인도 그 특수관계인의 특수관계인으로 본다.

가.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

나. 임원·사용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제적 연관관계

다. 주주·출자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지배관계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의 과세기준일 또는 납세의무성립일(이에 관한 규정이 없는 세목의 경우에는 납기개시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소유주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 구 지방세기본법 시행령(2023. 3. 14. 대통령령 제333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특수관계인의 범위)**

① 「지방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4호 가목에서 “혈족·인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이하 “친족관계”라 한다)를 말한다.

1. 6촌 이내의 혈족
2. 4촌 이내의 인척
3.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4.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로 입양된 사람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제24조(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특수관계인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시장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문을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5-06-27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9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2. 대통령령 제246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부칙 제8조에 따른 코스닥시장

② 법 제46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해당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친족관계
2. 경제적 연관관계
3. 경영지배관계 중 제2조제3항제1호가목, 같은 항 제2호가목 및 나목의 관계.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가목 및 제2호나목 중 “100분의 30”은 각각 “100분의 50”으로 본다. 끝.